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- 1 호

「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1. 제안이유

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허용시기 구체화 및 발언의원 수를 확대하고 발언의원의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5분자유발언의 허용시기 중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하고 발언의원수를 6인으로 확대함(안 제38조의2제1항).
- 나. 5분자유발언 신청의원수가 6인 초과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 위원회별 발언의원을 안배하고 6인으로 한정함(안 제38조의2제3항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: 운영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1, FAX 042-270-5049, E-mail : pooh7298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규칙안 : 붙임

대전광역시의회 규칙 제 호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"본회의"를 "본회의(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)"로, "5인"을 "6인"으로 한다.

제3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원이 6인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여 6인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<u>본회의</u>	제38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<u>본회의</u>
가 개의되는 경우 <u>5인</u> 을 초과하지 않는	(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)
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	<u>6</u>
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	
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	
5분 이내의 발언(이하"5분자유발언"이라	
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
	원이 6인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장
	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
	회별 안배를 고려하여 6인으로 한다.
<u>③</u> (생략)	<u>④</u>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 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 께 표기할 수 있다.
- 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